

< 성인지 예산서 개요 >

◆ **성인지예산제도 (性認知豫算制度, gender-responsive budgeting) :**

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

◆ **대상회계 :** 일반회계, 기타 특별회계, 기금

◆ **대상사업**

-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

구 분	대 상 사 업	비 고
필수	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	-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
	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-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
권장	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	-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◆ **제외대상 :**

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 등

- 행정운영경비 :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
- 재무활동 :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
- 예비비 : 사업을 특정하거나,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

◆ **성인지 예산서 성격 :**

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정책과 사업이 편파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양성 요구에 평등하게 응답하며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인지·분석함